

문서번호 사회복지 2016-0301

수 신 보건복지부 차관 및 17개 시도보육정책위원회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 이경민 간사 02-723-5056 welfare@pspd.org)

제 목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공개질의서

날 짜 2016. 3. 9. (총 4 쪽)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공개질의서

.....

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초과보육(교사 대 아동비율 확대 보육)에 대한 근거와 입장을 첨부와 같이 공개질의합니다.
3. 3/16(수)까지 질의서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드리며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결과와 함께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후, 답변은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끝.

☐ 첨부자료 : 질의서 1부.

참여연대 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





[첨부자료]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공개질의서

정부는 2014년 초과보육(법정 교사 대 아동비율 확대 보육)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며, 2015년 3월부터는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의 초과보육을 전면 금지했고, 2016년부터 법인·민간가정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보건복지부는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라는 명목 하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요청을 하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에 초과보육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근거와 입장을 질의합니다.

○ 초과보육(교사대아동비율)의 질의사항

질의1_초과보육 확대 편성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 의하면,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은 제6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제17조의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의 범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 벽지, 행정구역상 면 지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이 아니면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 그러나 ‘보육사업안내’는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지침일 뿐, 상위법에서 위임한 바가 없음으로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것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위반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법치주의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초과보육 확대 조치는 작년부터 금지하였던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의 초과보육도 재차 허용하는 것으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공공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는 초과보육 확대 편성의 법적 근거가 무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2_초과보육 허용은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가뜩이나 열악한 교사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육아정책연구소(2013)¹⁾에 의하면 보육교사 근무시간은 주당 55시간으로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당 40시간 보다 15시간이나 더 깁니다. 또한 휴식 시간은 일일 평균 17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아가 법에 명시된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임금수준 또한 낮습니다. 이처럼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및 처우는 열악하나 정부의 개선 의지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또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민간에 맡겨져 있으며 정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육의 질 저하 문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은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우리나라 보육환경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고용체계 및 처우개선이 필요함에도 문제 해결 없이 초과보육을 확대하는 것은 교사의 노동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초과보육시 아동은 결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는 초과보육 확대 편성으로 아동의 돌봄 받을 권리 및 교사들의 노동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의3_초과보육 확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역행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OECD 최저수준이며, 고령화는 급격히 진행 중으로 시급히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저출산 대책으로 ‘안심하고 믿을

1) 김은영 장혜진 조혜주, 2011. 영유아 교사 복지 실태와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 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초과보육 확대는 교사들의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져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보장할 수 없으며,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은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기존에 정부가 국민들과 약속했던 초과보육 금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정부 스스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는 초과보육 확대 편성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역행한다는 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입니까?